

해외통관애로

FTA TRADE REPORT

대만의 통상환경 및 통관제도

노영예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관세연구팀 선임연구원



대만의 통상환경 및 통관제도



노영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관세연구팀 선임연구원



1. 들어가며

대만은 2021년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제6위 수출상대국이자 제6위 수입상대국이다. 한국의 對 대만 주요 수출 품목은 집적회로반도체, 석유화학 중간원료, 경유, 기초유분, 인쇄회로 등이 있으며 對 대만 주요 수입 품목은 집적회로반도체, 개별소자 반도체, 인쇄회로, 광학기기부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이 있다.¹⁾

대만은 현재 미국과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협상을 5년 만에 재개 하였으며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신청했다. CPTPP 회원국인 뉴질랜드 및 싱가포르와는 각각 ECA(경제협력협정), EPA(경제동반자협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다.

다만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의 반대가 강경한 상태로 가입 여부가 아직은 불투명하다. 우리나라 또한 현재 CPTPP의 가입을 고려 중에 있다.

CPTPP가 회원국 간 관세 인하 및 무역 촉진, 디지털 무역, 전자상거래 등에 대해 다루는 협정인 만큼 우리나라와 대만의 가입이 이루어진다면 양국 간 경제협력의 강화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국제 인증을 받더라도 국내의 인증을 별도로

취득해야하거나 현지의 검사 및 검역 규정에 따라야 하는 등 비관세 장벽으로 인하여 통관이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입국인 대만의 통관제도의 전반적인 사항 및 유의해야할 점을 살펴봄으로써 수출업체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대만의 통관제도

대만은 재정부 산하 관무서(財政部 關務署)에서 우리나라의 관세청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출입 통관과 관련된 업무를 관할하고 있다.

대만의 통관은 ① 수입신고 ② 물품검사 ③ 세금납부 ④ 물품반출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수입신고는 운송수단의 도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에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시 신고 기한 만료일 익일부터 1일당 200NTD(신대만달러)의 체납금이 징수된다.

수입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송장 또는 상업 송장 사본, 포장 리스트(Packing list)(대량 또는 균일 포장 화물에 대해서는 제출이 면제된다)

1) MTI 4단위 기준,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참조(2021.10월 기준)

- 수입제한품의 경우 경제부 국제무역국(國際貿易局)에서 발행하는 수입 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 통관업체에 위탁 시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위임장의 승인 기간은 1년 이하이다.
- 화물가액신고서는 판매자와 납세자 사이의 특별한 관계가 명시되어 있을 시 제출하며 여행자의 수하물, 소포, 샘플, 선물, 면세품, 재수입물품,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에서 수입하는 화물, 보세 공장, 수출가공구역 및 과학단지에서 수입하는 화물에는 화물가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관세율 Ⅱ열에(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율 Ⅰ열) 따른 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세관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C/O)를 제출해야 한다.
- 세관 검사를 위해 카탈로그, 설명서 또는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 기타 관할기관이 현지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별도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예: 살충제 수입에 대한 농약 허가 및 살충제 판매 허가서, 무면허 수입업자에 대한 면허소지자의 위임장 등)

수입신고 후 물품은 C1, C2, C3의 3가지로 분류되어 검사가 이루어진다. C1은 문서 검토와 물품 검사가 모두 면제되고 C2는 문서의 검토만 이루어지며 C3는 문서 검토 및 물품 검사 모두 이루어진다.

C2 또는 C3을 적용 받은 대상자는 수입신고서를 다음 날 영업시간 내에 세관에 서면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았을 시 세관은 경고 또는 6,000~ 30,000 NTD의 체납금을 징수한다.



3. 대만의 사전심사 제도²⁾

세관으로부터 납부 고지를 받은 후에는 14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규정된 기한 내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의 익일로부터 일별로 미납세액의 0.05%의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수입물품의 통관을 촉진하기 위해 수입화물의 과세가격 산정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예상되는 관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한 후 화물을 반출하고 관세액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관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세관은 6개월 이내에 납부세액을 확정해야 한다.

납세자가 세관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세금 납입증을 수령한 날의 익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세관에 재조사를 신청하고 전체 세금 또는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한 후 물품을 회수 할 수 있다.

과소납부 및 초과 환급의 경우 세관이 추가납입 통지서를 송달한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기한 만료일 익일부터 추가 납입 일까지의 미납세액에 일별로 0.05%의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대만은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에 대한 사전 심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통관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내용에 대한 판정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관무서는 사전심사 신청이 접수 된 후 신청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일반적으로 과세가격 사전심사의 경우 서류 접수 익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경우 서류 접수 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 사전심사의 결과의 경우 접수 익일로부터 2달 이내에 회신이 이루어진다.

사전심사의 결과는 결정서의 발행 후 관무서에서 달리 수정하지 않는 한 3년간 유효하다.

해당 사전심사 결과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재조사 결과에도 동의하지 못할 시에는 물품의 수입이 이루어지고 난 후 관세법 상 행정구제절차에 따라 불복하는 방법이 있다.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통관제도 대만」 참조

4. 대만의 AEO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로 기업이 공인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관무서에서 심사한 후 인증을 통해 수출입과정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대만의 AEO는 AEO G(신속통관) 및 AEO S(보안 및 안전 통관)의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는 2015년 12월, 수출입 안전관리 AEO MRA(상호인정약정,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체결하였으며 2016년 10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AEO MRA는 우리나라에서 AEO로 인증 받으면 MRA를 체결한 국가로 물품 수출 시 현지 세관에서 통관 혜택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세관이 한국 AEO업체의 공인번호를 대만 세관에 통보하면 대만 수입자가 신고한 수입신고서의 AEO공인번호와 한국 통보자료를 대조·확인하여 자동으로 혜택이 부여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AEO 공인기업은 우선적인 통관이 가능하며 검사비율 또한 감소하게 된다. 통관과 관련한 애로사항이나 위급한 상황이 있는 경우 소통창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5. 대만의 수입 규제

대만의 관세법 상 수입금지 물품은 위조 또는 가짜 통화 또는 증권, 위조 통화,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을 위반하는 문서 등이 해당된다.

대만의 무역법에 따라 경제부 국제무역국에서 네거티브리스트³⁾ 방식으로 국제 조약, 무역협정, 국방, 사회 보장, 문화 보호, 위생, 환경 또는 생태 보존, 정책 요구 등에 따른 수입제한 대상 물품목록을 선정하여 세 자리 코드로 표시하고 있다.

수입 관리품목(code 111)의 경우 경제부 국제무역국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수입이 불가능하며 수입 조건부

허가(code 121)품목은 국제무역국의 승인을 받은 후 특정 조건에 따라 물품의 관할 당국에서 발행한 허가증 첨부와 같은 별도의 수입 규정을 따라야 한다.

또한 특정국의 특정 수입품 역시 국제무역국의 승인을 받아야 대만 내로 수입이 가능하다.(code 113)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 중 허가가 필요한 물품)

그 밖에 비료, 독성화학물질, 화장품, 유해 폐기물 및 일반 산업 폐기물 등 일부 품목들의 경우 코드

[그림 1] HS 검색 화면

CCC Code	商品	Goods
85071000000	發動機啟引用之鉛酸蓄電池	Lead-acid accumulators, of a kind used for starting piston engines
85072000008	其他鉛酸蓄電池	Other lead-acid accumulator
85073000006	鎳鈦蓄電池	Nickel-cadmium accumulators
85074000004	鎳鐵蓄電池	Nickel-iron accumulators
85075000001	鎳氫蓄電池	Nickel-metal hydride accumulators
850760000107	鋰離子蓄電池行動電源	Power bank with lithium-ion accumulators
850760000900	其他鋰離子蓄電池	Other Lithium-ion accumulators
850780000112	鎳氫電池行動電源	Power bank with lithium accumulators
850780000194	其他鎳蓄電池	Other Nickel accumulators
850780000906	其他蓄電池	Other accumulators
85079000003	蓄電池零件	Parts for accumulators

자료:<https://portal.sw.nat.gov.tw/PPL/eng> (대만 재정부 관세율 조회 시스템)

3) 원칙적으로 수입의 자유화가 인정된 무역 제도에서 예외적으로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품목의 리스트

표기와 관계없이 국제무역국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서류 제출 및 특정 절차에 따라 수입해야 한다.

수입물품이 검사 또는 검역대상인 경우에는 대만의 수입물품 분류에 A, B, C, F, H 또는 W의 수입 규제 코드로 검사 및 검역종류가 표시된다.

또한 수입규제 코드 옆에 2자리 숫자를 추가로 표기하여(예:B01) 물품을 분류한다.(A.수산물, B.동식물, C.표준 검험국의 검사물품, F.식품, H.약재, W.주류)

대만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한해 코드명을 별로도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MW0는 수입 금지,

MP1는 조건부 수입 허가를 나타낸다. 특히 중국 물품의 경우 수출지가 중국이더라도 원산지가 중국이 아닌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별도의 제한 없이 대만 내로 수입이 가능하다.

한국의 브랜드로 대만에 수출되었으나 물품의 원산지가 중국인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기관의 별도 승인사항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대만 관세를 조회하는 <https://portal.sw.nat.gov.tw/PPL//eng->Online Information Queries> 및 국제무역부홈페이지 <https://fbfh.trade.gov.tw/fh/ap/queryCCCRegFormf.do>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대만 국제무역부

The screenshot shows the 'Classification of Commodities and Regulations' section of the Bureau of Foreign Trade website. On the left, there's a sidebar with links for Home, Import and Export Regulations, Importation of Mainland China products, Download importation of Mainland China products, Download Information, and Authority Concerned. The main area has a teal header 'Import and Export Regulations'. It contains fields for Commodity Code (with options for single code, range, or CCC code), Commodity Description (with a note about partial descriptions), and Regulation codes (with Import and Export buttons). Below these are buttons for 'Import Regulation codes' or 'Export Regulation codes' and a search bar with 'Search' and 'Clear' buttons.

자료: https://fbfh.trade.gov.tw/fh/ap/queryCCCRegFormf_e.do (대만 국제무역부 홈페이지)

6. 맷음말

대만은 외교 활동 범위 제한으로 인해 국제기구 참여가 자유롭지 않아 제약이 많은 편이다. 특히 제품 검역, 검사 또는 인증의 경우 국제 인증보다는 대만 현지의 절차 및 인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해당 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최신 사항은 KOTRA, aT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품목분류의 경우 대만 상품분류코드인 C.C.C코드

(Customs Cooperation Council Code)는 앞의 6자리를 제외한 뒷자리가(총11단위)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으므로 수출 전 C.C.C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수입신고 내용과 실제 품목, 제출서류 기재사항을 일치시키고 대만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중국어(번체자)로 된 라벨을 부착하는 등⁴⁾ 요건을 충실히 구비한다면 우리나라 업체들의 수출이 보다 원활해 질 수 있을 것이다.



4) KOTRA 자료 참조